〈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키즈스피치마루지』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에스앤브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04.

주식회사 에스앤브이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 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 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	개서 등록 번호	20130149			
정보공개기 최초 등록일 및 최	-	정보공	개서 최초 등록일	2013.08.27			
, = 0 , = x .	0 0 12	정보공	개서 최종 등록일	2023.06.07			
『 ヲ .	『키즈스피치마루지』가맹본부 (주) 에스앤브이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송	파구 올림픽.	로 119, 4층 제4비27호	(잠실동 잠실파인애플상가)			
전화번호	070-872	4-4203	팩스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	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070-8724-4203			
홈페이지	www.marc	ooji.com - 2	담당자 이메일	jlee@marooji.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 시작일
- 2. 가맹사업 연혁
- 3. 가맹사업 업종
-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5.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 11. 가맹금 예치기관
-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 시정조치 등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形)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영업지역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목 차 >

-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류 및 수정, 해지
-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의 기준
- 9.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서류※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소		
	키즈스피치마루지 외 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19, 4층 제4비27호 (잠실동 잠실 파인애플상가)		
주식회사 에스앤브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장 등록	일	대표자	전화번호	
	2010.10.25.	2010.10.25.		이지은	070-8724-4203	
	법인 등록번호	124411-0107088		사업자등록번호	137-86-05975	

2.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관여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기	이르 사 ㅎ	영업표지	주소		
관계	이름/상호	8합표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UH UH	이지은	키즈스피치마루지 외 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19, 4층 제4비27호 (잠실동 잠실 파인애플상가)		
대표	㈜에스앤브이		이지은	070-8724-4203	

^{*}정기변경등록 접수 후 감사 사임 (2024년 4월 19일 사임 등기) 하였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키즈스피치마루지	-
상 호	<u>키즈스피치마루지 ○○점</u>	-
상표(서비스 표)	키즈스피치마루지	등록번호 4102611940000 <mark>설정등록일:: 2013.06.13</mark>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1]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2021	815,384	138,767	676,616	583,393	4,695	36,736
2022	981,195	122,348	858,847	705,706	157,898	182,231
2023	1,182,227	122,384	1,059,,843	769,245	194,554	200,995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위 1)의 매출액은 모두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입니다.

- 2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크 선표	OL E	\$ TIO	사업경력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사업체명 담당		담당 업무	
가맹사업	이지은	대표이사	2010.10.25.~현재	(주)에스앤브이	대표, 회사업무 총괄	
관련 임원	이시는	네표이자	2010.10.25.~연세	(구)에드앤드이	네표, 외자십구 등필	

*정기변경등록 접수 후 감사 사임 (2024년 4월 19일 사임 등기) 하였음.

7. 가맹본부의 임직원수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한 不(8)
20243년 12월 31일	2	-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기계 사는 (시크		78	사업경력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에스앤브이	가맹사업 경영	2020. 6월~현재	마루지플러스 논술 (등록번호: 20230427)이라는 영업표지의 독서 논술 교육사업	

마루지플러스 논술은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정보공개서에서 함께 사용을 허락하였던 영업표지이나 2023년 3월 17일 키즈스피치마루지에서 분리하여 정보공개서 신규등록함에 따라 별도의 가맹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 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교재 등 편집제작물에 관련 내용은 별첨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명칭	권리 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 기간 만료일
<서비스표> 기조스피치 마루지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활동	출원 2012.05.15. 등록 2013.06.13	출원번호 4120120016709 등록번호 4102611940000	(주) 에스앤브이	2033.06.13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 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키즈스피치마루지』를 시작한 날 : 2012년 04월 05일

(『키즈스피치마루지』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0년 10월 25일)

2.『키즈스피치마루지』연혁

당사의 『키즈스피치마루지』에 대한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스앤브이	키즈스피치마루지	이지은	2012.04.05.~현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19, 4층 제4비27호 (잠실동 잠실 파인애플상가)

3.『키즈스피치마루지』업종

『키즈스피치마루지』에 대한 가맹사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정답표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키즈스피치마루지	기타 교육	스피치 교육		



4. 최근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키즈스피치마루지』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TICH		2021.12.31	•		2022.12.31.			2023.12.31	•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3	21	2	25	23	2	24	22	2
서울	8	5	2	8	6	2	8	6	2
부산	-	-	-	-	-	-	-	-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	-	-	1	1		1	1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	-	-	1	1	-	1	1	-
세종	-	-	-	1	1	-	1	1	-
경기	11	11	-	10	10	-	10	10	-
강원	1	1	-	1	1	-	1	1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	-	-	-	-	-
경남	1	1	-	1	1	-	-	-	-
제주	-	-		-	-	-		-	-

^{* 2022}년 신규지역 가맹점 3곳 (인천, 울산, 세종) 가운데 인천 가맹점은 전년에 경기지역으로 분류 된 가맹점을 재분류한 것이고, 울산 가맹점은 전년도 경북(울진)에서 이전한 가맹점입니다.

5. 최근 3개년도 말『키즈스피치마루지』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22	0	0	1	1	21
2022	21	2	0	0	1	23
2023	23	0	1	0	0	22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키즈스피치마루지』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바로 전 3년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 서등록번	업종	가밍	성점/직영점의	1 수
TE	· 영화/의금	8 급표시	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에스앤브이	마루지플러스 논술	20230427	기타교육	4 / 2	12 / 2	11 / 2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mark>2023년</mark> 연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VAT미포함)					
지역	가맹점 수	연간 평균	·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매출액	비고
		연평균	3.3m² 당	상한	3.3m² 당	하한	3.3m² 당	
전체	22	171,708	5,160	490,000	16,500	5,850	755	22곳 산출
서울	6	220,454	5,052	490,000	16,500	65,000	755	6곳 산출
부산	-	해당없음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10	201,500	5,848	420,000	12,052	85,000	3,152	10곳 산출
강원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키즈스피치마루지 영업표지와 마루지플러스 영업표지를 함께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서 키즈스피치마루지 영업표지에 대한 매출액만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합쳐진 매출액으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가맹점 가운데 1곳은 지난 1년간 휴업상태여서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가맹점 운영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자료를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8.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키즈스피치마루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2	2,248일 (6.2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년도의 가맹사업 관련 연간광고 및 판촉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mark>부가세 포함</mark>)

			지출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광고	비공개	비공개	10,984	10,984	0	비공개

* 위 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학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아 손익계 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되었음.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잠실금융센터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72	1588-5000 02-423-312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우리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발급받아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m)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 (1599 -5000)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알리도 록 하겠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법」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사실이 없습니다.

3. 형(形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 맹 비	A-TYPE (학원형)	19,800	계약	영업 개시	가맹점 모집을	반환시 다시에서 저희
	B-TYPE (교습형)	8,800	체결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당사에서 정한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2,200	계약 체결일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하지 않음	개점전 교육비 TYPE 별 동일

● 개점 행사비와 관련하여 당사는 오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픈설명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가맹점주님께서 는 본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A/B TYPE 동일)	계약체결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 (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이내

● 보증금은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이행담보목적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변경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예치가맹금액				
TE	A-TYPE (학원형)	B-TYPE (교습소형)			
합계	25,000	14,000			
가맹비	19,800	8,800			
교육비	2,200	2,200			
개점홍보비	없	젒음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없음)	3,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름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A-TYPE (학원형)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비용 (기준: 99 ㎡/ 30평)								
구분	지급대상 총 금액 3.3m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총 계]	-	[37,950]	[1,265]	-	-			
간판	업체자율	2,200	-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인테리어 (실내)	업체자율	29,700	990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자재구매전 계약해지시			
학원설비 및 집기	업체 자율	5,500	183.3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 초도물품 (교재)	별점 2. 참조	550	-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전 계약해지시			

^{*} 교재중 일부만 먼저 주문 가능

② B-TYPE (교습소형)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비용 (기준: 33 ㎡ / 10평)							
구분	지급대상	총 금액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총 계]	-	[14,960]	[1,496]	-	-		
간판	업체자율	2,200	-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인테리어 (실내)	업체자율	9,900	990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자재구매전 계약해지시		
학원설비 및 집기	업체 자율 별첨	2,310	231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 초도물품 (교재)	별점 2. 참조	550	-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전 계약해지시		

^{*} 교재중 일부만 먼저 주문 가능



③ 참고사항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간판 및 인테리어, 교육설비 및 집기 등은 직접 자율적으로 시공 공급 가능하며, 별도의 감리비는 없습니다.
- 인테리어의 3.3㎡당 가격은 대략 99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되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변동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A/B-TYPE 별 동일함)
-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어닝, 소방공사, 전기증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냉난방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화장실 등은 별도로 설비를 추가 부담하셔야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100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200만원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00만원
계약 체결 후 발생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실제 발생비용 전액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 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2. 만 20세 이상일 것 3. 당사의 스피치강사과정을 수료한 자
강사	특별한 기준 없음	1. 만 18세 이상일 것 2. 당사의 스피치강사과정을 수료한 자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키즈스피치마루지』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걸 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9)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금액/율은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회원 1인당 수강료의 11%	매월 5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월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 간판변경비	업체자율	교체보수 필요시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시설,기기 교체보수비	업체자율	교체보수 필요시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필요시 내구연수 등 감안 협의
점포환경 개선	업체자율	가맹본부분담비용 제외한 나머지				
개점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1)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실시 후 반환불가	-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광고실시 후 반환불가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날까지	-	-	금전지급 기한 경과 시 부담

- 리스료, 재고관리비용, 회계처리비용, 영업지역보장금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광고 및 판촉분담비에 관하여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분담기 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구 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산출 불가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산출 불가

● 당사는 스피치 교육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별첨 2.에 공개한 바와 같이 자체 인력을 통해 스피치 교육에 필요 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계로 차액가맹금 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벌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계약해지 및 종료 후 10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 운영에 관한 관계서류와 지원품목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전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3개월이내의 공급품에 한하여, 재판매의 가능여부,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10% ~50% 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반품이 불가하고, 반품이 불가한 일부 물품 (교재, 보드게임, 책갈피 등 수업물품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만료나 중단시 가맹본부에서 받은 파일은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공급품 (교재, 워크지 등)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



정하는 자와 거래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프모(다이)	공급	가격	구분
표인	품목(단위)	상한 하한		Τ₩
1	"별첨 2. 주요품목"참조요망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키즈스피치마루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 다.

2) 특수관계인이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사업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의해 거래를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



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여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해야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키즈스피치마루지 수강생의 교육 및 센터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교재 및 부교재 등, 가맹 본부 제공상품 일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교육상품을 제공할 수 없음	1차 위반:구두 경고2차 위반:서면시정요구 후가맹점운영권 제한3차 위반:계약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승인되지 않는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키즈스피치마루지의 타 가맹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1차 위반 : 구두 경고 2차 위반 : 서면시정요구 후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모든 물품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가맹점운영권 제한 3차 위반 : 계약해지	경우에는 제외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상품별 권장가격에 대한 사항은 『키즈스피치마루지』홈페이지(www.marooji.com) 또는 별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 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 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 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차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동일한 업종 범위		
스피치 전문 학원 및 교습소	키즈스피치마루지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및 방법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의 행정구역 당 "읍,면,동"의 범위를 원칙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업지역 내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종합병원 등의 대형건물은 특수상권으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 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조정 통보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할 예정입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매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 11. 74)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 몰	기타 온라인	
2023	비중산정 불가함	비중산정 불가함-	-	-	

^{*} 마루지플러스와 같이 운영하여 구분이 안되어 비중산정이 불가함

2) 바로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 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해지

1) 가맹계약의 기간

『키즈스피치마루지』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갱신시에는 2년씩장 연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구제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	-----------------------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D,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괴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 2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호1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 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 후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 3항	
가맹점 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 4항	25조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조	구호 각호 및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	31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자의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1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지도에 의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22조 7항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 매입한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 하는 경우	27조 5항	
보고의무에 관하여 허위로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28조 6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 3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게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조 13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 1항	2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니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며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31조 4항 각호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31조 3항
경우	각호 1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이 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31조 2항
경우	각호 1

-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 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안 가맹점 운영기준을 주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도 계약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u> </u>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 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제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서면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 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 중에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키즈스피치마루지』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엉금지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계약기간 중	『키즈스피치마루지』와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학원사업	국내 전 지역	해당사항 없음 (문의: 070-8724-4203)

●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키즈스피치마루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

당사는 『키즈스피치마루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일 6시간 이상 자율결정	주 5~ 6일	문의: 070-8724-420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제 10호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 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4명 이상 [99 m³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 시 매장을 방문하여 청결도, 물품의 사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의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키즈스피치마루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비고
一下正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T 급 결시	חודי
장고 전체 행사 모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참여 결정→ 광고 납부	1. 대중매체 광고 등 광고 필요에 따라 필요시 분담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절차는 변동 될 수 있음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없음		2. 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반대시 미시행
판촉 전체 행사	전체행사	(가맹본부와 기	행사에 따라 차등 생본부와 가맹점사업자측간 균등보담 원칙)	상기와 동일	가맹점사업자 30% 이상 반대시 미시행
전세 중시	개별행사	가맹점 100% 부담		해당없음	가맹점 단독 판촉행사

-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본사의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 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 분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



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 3년 이 경과되는 날까지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 해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갑"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숲일천만원 (₩10,000,000원)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시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의 지체배상금을"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급격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 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 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갑"이 지불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약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070-8724-4203)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5		
1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		
점포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 최종 개설 협희	D-30	IV.가맹점사업자의	
	- 가맹 계약 체결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	부담 중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점포 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8	1)~4) 참조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협희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7~2		
교육	- 교육(개점 전 교육)	D-20~2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2~1		
오픈	-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 및 시행령 제 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년으로 함)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 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기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창업자금관련 대출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W.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키즈스피치마루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키즈스피치마루지』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키즈스피치마루지』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7일 (21h~30h)	220만원	최초 계약시 이수 (1일 7시간 교육기준)
수시 교육	1일 (2h)	기본이론교육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	신 교육과정 및 필요시 등
툭별 교육	1일 (2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관리자 등)입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강남잠실본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9 파인애플상가 4B27호
2	서울	강남대치분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25 도곡렉슬상가 310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340일 (<mark>11년 11개월</mark>)	

^{*} 키즈스피치마루지 영업표지로 운영한 기간임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308,904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 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 입니다.]

^{*} 직영점의 매출액은 영업표지별로 구별하기 어려워 전체 직영점의 매출을 기재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 현황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강제/권장 품목 및 주요품목 공급가격

1. 강제/권장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품목 중 필수강제품목은 반드시 당사(지정업체포함)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사입금지 품목이며 권장품목 은 귀하의 의사에 따라 직접구매 내지 희망 시 당사(지점업체포함)에서 공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권장품목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맞게 구매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필수품목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별도의 공지를 통해 재안내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 달받은 필수품목 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주요품목 공급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교재협회 등록 저작권

본사에서 지급하는 초도물품(교재)에 대한 저작권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인근 가맹점 사업자 현황

2023년 12월말 영업중인 키즈스피치마루지 가맹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가맹점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단,	정보공개서 "별첨 3 인근가맹점현황"으로 대체함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10 개 미만시에는 해당지역 신규가맹점을 하단에 추가								
		기재함.)							
1									
2									
3									
4									
5									
6									
7									
8									
9									
10									

수령일자: 20 년 월 일

수 령 자: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제공 받은 사실	<i>"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i> [하단 자필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수령확인서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인) 또는 서명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및 가맹금 예치신청서 수령확인서

•	가맹점명 :	<u>점</u>				
•	계약자명(가맹점주) :		(생년월일:	년	월	일)

1.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사실확인서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치 예정일)과 본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 기준 14일 이전에 아래와 같이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조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가맹계약서 수령일	20	년	월	일
수 령 자				(인) 또는 서명
계약자와의 관계				

2. 가맹금 예치신청서 수령 확인서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범위의 가맹금(가맹계약서 제 8 조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아래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설명을 받았으며 가맹금 예치 후 예치증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단, 프랜차이즈 피해보상보험증권 수령시는 해당사항 없음)

가맹금 예치 신청서 수령일	1	년	월	일	
당사 예치가맹금 취급금융 기관					은행
수 령 자			(인) 또는	서명
계약자와의 관계					

위 계약자: (인) 또는 서명

(* 계약자와 수령자가 상이한 경우, 계약자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요)



<u>가맹금 예치 신청서</u>

• 가맹금예치후 예치증사본 당사 제출요함. (피해보상보험증권 수령시는 해당없음)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0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본부	상호명 (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예치가맹금		₩ (금	원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